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구상엽

전화 052-228-4466

보도자료
2021. 9. 30.(목)

주무 : 형사3부장 김현아

제 목 **환경 분야 공무원 등 뇌물 사범 수사 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□ 울산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김현아)는 2021. 4.경 환경부(중앙환경 사범수사단)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계좌추적, 압수수색,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**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, 환경업체 대표 등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**을 수사하여,

- 환경업체 대표로부터 금전, 향응 등 합계 1,600만 원을 수수한 **A시청 前 환경OO과장(4급, 서기관), A시청 공무원, B기술원 직원** 등에게 합계 5,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, 정부지원금 약 6,400만 원을 편취한 **C환경업체 대표이사**를 각 구속기소하는 등 **총 6명을 기소(2명 구속)**하였음

1 피고인

- 가○○(60세, 前 A시청 환경○○과장, 구속)
- 나○○(45세, B기술원 연구원, 前 B기술원 해외사업2실장, 불구속)
- 다○○(52세, B기술원 ○○○○처장, 前 B기술원 환경기술개발단장, 불구속)
- 라○○(44세, B기술원 연구원, 불구속)
- 마○○(44세, C환경업체 대표이사, 구속)
- 바○○(37세, C환경업체 연구개발팀장, 불구속)

2 공소사실 요지

※ 별첨과 같음


3

수사 경과

- '21. 4. 울산지검, 환경부로부터 '뇌물수수 등 사건' 수사의뢰 접수
※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'울산 산단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등'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 내용을 발견, 검찰에 「직무범위 외 범죄혐의」를 수사의뢰
- '21. 4.~8. 계좌추적, 주거지·사무실(A시청, B기술원, C환경업체 등) 압수수색,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등
- '21. 9. 9. 가○○, 마○○ 각 구속영장 발부
- '21. 9. 27. 가○○, 마○○ 구속 기소 / 나○○, 다○○ 불구속 기소
- '21. 9. 29. 라○○, 바○○ 불구속 기소 / 마○○ 추가 기소

4

수사 의의

- 대학 내지 대학원 등 학연으로 맺어진 공무원, 공공기관 직원, 환경업체 대표 등이 장기간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규명하여 엄단함
- 본건은 환경 분야의 공무원,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,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 분야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여 환경오염을 방치·은폐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 사안임
-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비를 위법·부당하게 수령해 비자금을 만들고 뇌물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부지원금 행정의 질서와 공정을 해하고 국가재정을 손실시킨 사안임
- 환경부 특사경은 '대기측정기록부 조작' 등 환경사범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「직무범위 외 범죄혐의」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, 검찰은 압수수색, 계좌추적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관계 및 반복된 뇌물수수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 특사경의 직무 공백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협력한 결과물임
- 앞으로도 울산지검은 경찰,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사범, 반부패사범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. 

별첨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
1	가○○ [구속] (60세, 前 A시청 환경○○과장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7. 7.경 C환경업체 대표이사 마○○에게 사적모임 식대 등을 요구해 현금 500만 원 수수 [뇌물수수] '17. 10.경 위 마○○에게 지역 합창단의 지원금을 요구해 현금 300만 원, 식비대납 35만 원의 향응 수수 [뇌물수수] '17. 12.경 및 '18. 3.경 위 마○○에게 행사 스폰서 등을 요구해 2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 및 식사 등 8만 원의 향응 수수 [뇌물수수] '18. 8.경 위 마○○로부터 여름 휴가비를 구실로 현금 100만 원 수수 [뇌물수수] '18. 12.경 위 마○○에게 직원 회식비를 요구해 식비대납 696,000원의 향응 수수 [뇌물수수]
2	나○○ (45세, B기술원 연구원 前B기술원 해외사업2실장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7. 6.경 환경분야 정부지원 사업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, C환경업체의 사업자 선정 심사 당일 위 업체의 대표이사 마○○로부터 61만 원 상당의 유흥 주점 접대 등 향응 수수 [뇌물수수] '17. 7.경 위 마○○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168,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[뇌물수수] '17. 8.경 서울 강남구 일식당에서 위 마○○로부터 식사 등 188,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[뇌물수수] '17. 12.경~'18. 12.경 위 마○○로부터 정부지원 사업 선정 등 대가로 3회에 걸쳐 2,000만 원 수수 [뇌물수수]
3	다○○ (52세, B기술원 ○○○○처장, 前 B기술원 환경 기술개발단장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7. 8.경 환경분야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, C환경업체의 연구사업 선정 등 대가로 위 업체의 대표 마○○로부터 현금 1,000만 원, 식사 등 188,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[뇌물수수] '18. 7.경 위 마○○로부터 위 연구사업 선정 등 대가로 현금 200만 원 수수 [뇌물수수]

4	라○○ (44세, B기술원 연구원)	'18. 1.경 환경분야 정부지원 사업의 실무자로서, C환경 업체 대표이사 마○○, 연구개발팀장 바○○로부터 유흥 주점 접대 등 83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[뇌물수수]
5	마○○[구속] (44세, C환경업체 대표이사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과 같이 A시청 공무원 가○○에게 6회에 걸쳐 1,612만 원 상당의 뇌물 제공 [뇌물공여] 2. 제2항과 같이 B기술원 해외사업2실장 나○○에게 6회에 걸쳐 2,096만 원 상당의 뇌물 제공 [뇌물공여] 3. 제3항과 같이 B기술원 환경기술개발단장 다○○에게 2회에 걸쳐 1,218만 원 상당의 뇌물 제공 [뇌물공여] 4. 제4항과 같이 C환경업체 연구개발팀장 바○○와 공모하여 B기술원 연구원 라○○에게 유흥주점 접대 등 83만 원 상당의 향응 제공 [뇌물공여] 5. '17. 6.~'19. 2. 뇌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비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B기술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약 6,450만 원 편취 [사기]
6	바○○ (37세, C환경업체 연구개발팀장)	'18. 1.경 C환경업체 대표이사 마○○와 공모하여, 환경 분야 정부지원 사업의 실무자인 B기술원 라○○에게 유흥주점 접대 등 83만 원 상당의 향응 제공 [뇌물공여]